군산시 훈령 제353호

군산시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강임준



2018년 9월 3일

군산시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실무직근로자"를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실무직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시"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실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제2조제1호의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칙」"을 "「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청원산림보호 직원은「청원산림보호 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을 "청원산림보호직원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실무원

- 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공사 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현장지도 단속 감시 인력, 부속실운영, 방문 민원인 접대·안내등 단순잡역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민원제증명 발급, 행정 전산프로그램 운영, 문서수발 및 정리, 연구·실험·검사·진료 업무보조 등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보조하는 행정보조 인력
-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용된 기간 제 근로자 중 실무직 전환인력
- 6. 정규직 전환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 가. 실무직 전환자 : 정규직 전환자 중 인건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근 로자
 - 나. 국도비 전환자 : 정규직 전환자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종사하거나 별도의 국·도비 보수지침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제4조제3항 및 제5항 중 "실무직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중 "실무직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무직근로자를"을 "실무직 근로자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실무직근로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무직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무직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실무직 근로자 정수책정 승인(불승인)통보서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직근로자 정수책정 승인서"를 "실무직 근로자 정수책정 승인 (불승인)통보서"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가목 중 "정수책정"을 "실무직 근로자 정수책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인력"을 "실무직 근로자 인력"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월별 급여내역 : 별지 제7호서식

제7조제2호다목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라목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실무직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직근로자"를 "실무직근로자"를 "실무직근로자"로 한다.

제9조 제목 "(실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을 "(실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실무직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실무직 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무직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별지 제11호 서식의"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직"으로, "한다"를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정규직 전환자 근로계약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계약서"를 "실무직 근로계약서"로,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실무직근로계약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의"를 "실무직 근로자의"로, "근로자와"를 "실무직 근로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근로자의"를 "실무직 근로자의"로, "근로자를"을 "실무직 근로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직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근로자와"를 "실무직 근로자와"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부서에서는 실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직 근로자 신 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청원경찰법시행규칙」"을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무직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15조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별지 제13호 서식 재직증명서, 제14

호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근로자의"를 "실무직 근로자의"로, "실무직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21조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23조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24조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25조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26조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업무상 능률의 현 저한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를 "영리를 추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단시간근로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29조 제목 "(근로자의 책임)"을 "(실무직 근로자의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31조 중 "근로자의"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의"를 "실무직 근로자의"로 한다.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에게"를 "실무직 근로자에게"로, "근로자의"를 "실무직 근로자의"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실무직근로자의"를 "실무직 근로자의"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실무직근로자가"를 "실무직 근로자가"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무직근로자에게"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실무직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별지 제15호 서식의"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는"을 "실무직 근로자는"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산시 포상 조례」"를 "「군산시포상조례」"로 한다.

제51조 중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칙」"을 "「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인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 3.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인서

제56조제1항제1호 중 "인사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19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도달되도록"을 "실무직 근로자에게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인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해당근로자"를 "해당 실무직 근로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을 "실무직 근로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제21호 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징계사유"를 "「군산시 취업규칙」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을 "실무직 근로자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근로자가"를 "실무직 근로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부득이"를 "근로계약서에 다르게 명시되거나 부득이"로 한다.

제62조 제목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여성 실무직 근로자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육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를 각각 "유아를 가진 여성 실무 직 근로자"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들"을 "실무직 근로자들"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근로자는"을 "실무직 근로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가"를 "실무직 근로자가"로 한다.

제66조 중 "근로자의"를 "실무직 근로자의"로, "근로자는"을 "실무직 근로자는" 으로 한다.

제67조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u>경조사별 휴가일수표</u>(제37조제1항과 관 런)"으로 하고 비고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 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실무직근로자 정수책정 요구서"를 "실무직 근로자 정수책정 요구서"로 하고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실무직근로자 정수책정 승인(불승인) 통보서"를 "실무직 근로자 정수책정 승인(불승인) 통보서"로 하고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실무직근로자"를 "실무직근로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실무직근로자 정수책정 승인대장"을 "실무직 근로자 정수 책정 승인대장"으로 하고 무기계약전환자란의 "무기계약 전환자"를 "정규직 전 환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직근로자 인력관리대장"을 "실무직 근로자 인력관리대 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실무직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무기계약 전환 심사위원용)"을 "실무직 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실무직 근로자 전환 심사위원용)"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하고 제7조의 "「군산시 실무직 관리규정」"을 "「군 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실무직근로자 신분증"을 "실무직 근로자 신분증"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실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서"를 "실무직 근로자 육아휴 직 신청서"로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실무직근로자"를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하고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를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를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직 근로자의 정수표(제5조 제1항 관련)

							실무원			E 7	귀 기	=101	حاماياءا	정	규직전환	환자
부	서	별	계	소계	시설물 ·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청원산림 보호직원	소계	실무직 전환자	국도비 전환자
	계		447	154	10	12	9	5	118	31	41	57	4	160	71	89
	보담당		3	2				1	1					1	1	
알	임담	赻	3	1					1					2	2	
총	무	과	29	6				1	5			15		8	8	
	획예신		1	1					1							
	計構		1	1					1							
회	계	과	2	2	1				1							
세	무	과	2	2					2							
징	수	과	2	2					2							
민	원봉시	<u> </u>	5	5					5							
인	재양성	성과	1	1					1							
지	격경제	레과	1	1					1							
항면	· 만물투	루과	1									1				
해역	양수산	<u> </u>	3	1					1					2	2	
산	림녹지	시과	23										4	19	19	
환	경정초	백과	5	2					2			3				
	원순환		50	2		1	1				41	3		4	4	
어린	沙행	뾒	61	3	1				2					58	4	54
	지지원		8	3	3									5	1	4
	청소		6	3					3					3		3
	화예술		1	1					1							
관	광진충	등과	5	5	1				4							
체	육진흥	등과	27	18		11			7			3		6	6	
	전총관		1	1	1					4.0						
건	설	과	23	5			1		4	18						
건	축경관	<u> </u>	3	1					1 7					2	2	
	통행정			13	1		5		1							
_	지정 <u>5</u>		5	5					5					1.0		11
보		소 (E)	26	11	0				11			3		12	1 7	11
	少 <u>字</u>		20	7	2				5			3		10	7	3
수	도	과	24	6			0		6	5		11		2	2	
하		과	8	2			2		0	4				2	2	
	驰		9	3					3			6		0.0		1 4
	12/2/-		40	15					15			5		20	6	14
	로만 ()		14	7					7			4		3	3	
	[字]		7	7				0	7					1	-	
	회사두		10	9				3	6	A				1	1	
소	룡	동	4							4						

[별지 제11호의2서식]

정규직 전환자 근로계약서

본 근로계약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된 정규직 전환자(실무직 전환자, 국도비 전환자)에 적용된다.

군산시장(이하 "사용자" 이라 칭함)과 근로자____은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대 포	군 산 시 장	사업 종류	관공서
)	사업체명칭	군산시청		
사용자	소 재 지	군산시 시청로 17		
	부 서 명			
	성 명		(한 자)	
근로자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	

제 1 조 (계약준수)

사용자와 근로자는 _____ 등의 수행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조 (근로장소)

근로자의 근로장소는 ____으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업무내용)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u></u>등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전환자 는 직종을 변경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다.

제 4 조 (근로조건)

1) 임 금

① 임금은 기본급(일급), 급식비, 명절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관계부처 임금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단, 일급은 전환 직전 사역단가로 한다.

- ② 급여의 지급일자는 매월 ()일로 하며,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온라인 입금한다.
-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경우 급여 지급시 일할 계산하여 공제토록 한다.
- ④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중단되는 경우 당월급여는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상여성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한다.

2) 시업 및 종업시간

-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②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자의 업무형편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근무시간 구분	평 일	토요일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12:00-	-13:00

3) 휴일 및 휴가

- ① 주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단, 도서관 등 사업장 휴무일이 다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전 주간을 개근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인정한다.
- ②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로 한다. 단, 사용자의 업무 형편 상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4) 퇴직금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 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5) 해고와 퇴직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태만, 질서문란, 기타 비위행위를 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국도비 전환자는 해당 국도비 보조사업이 중단되면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근로자는 퇴사시 퇴사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일방적 퇴사로 인해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기타 근로조건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취업규칙에 따른다.

7) 보고의무

업무상 관련내용, 개인의 신상과 관련 변경된 내용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제 6 조 (손해배상)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 조 (관련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및 단체 협약서에 따른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사용자 : 군 산 시 장 (인) 근로자 :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군산시(이하 "시"라</u> 한다)에서 근무하는 <u>실무직근로자</u> 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군산시에서 근무하는</u> <u>실무직 근로자</u>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u>"실무직근로자"</u> 라 함은 「지방공무원 법」상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u>시</u> 에서 직접 고용한 <u>자(이하 "근로자"라</u> 한다)를 말한다.	1. <u>"실무직 근로자"</u>
2. <u>"기간제근로자"</u> 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시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u>"기간제 근로자"</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복무감독부서"라 함은 <u>근로자</u> 의 복무 상황 및 근무실태를 지도·감독하는 총 무과와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4 <u>실무직 근로자</u>
5. "채용권자"라 함은 소속 <u>실무직근로자</u> (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 용·휴직·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 을 가지는 시장을 말한다.	5 <u>실무직 근로자</u>
6. "관리부서"라 함은 <u>근로자</u> 의 정수와 채용, 현원을 관리하는 인사부서를 말한다.	6 <u>실무직 근로자</u>
7. "예산부서"라 함은 <u>근로자</u> 의 보수 등 의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는 기획예산 과와 특별회계 관리부서를 말한다.	7 <u>실무직 근로자</u>

시

- 8. "사용부서"라 함은 <u>근로자</u>의 복무를 관장하는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 관, 사업소, 읍·면·동을 말한다.
- 9. (생략)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제2조 제1호의 실무직근로자
 - 2.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 경찰 (청원산림보호서기)
 - ②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및 <u>「군산</u> 시 청원경찰 복무규칙」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
 - ④ <u>청원산림보호</u> 직원은「청원산림보호 <u>직원배치에 관한 법률」</u>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 에 의한다.
-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u>근로자</u>의 직종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행정실무원: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관리, 공사 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 에 종사하는 인력, 현장지도 단속 감시 인력, 부속실운영, 방문 민원인 접대· 안내 등 단순잡역 보조 업무에 종사하 는 인력, 민원제증명 발급, 행정 전산 프로그램 운영, 문서수발 및 정리, 연 구・실험・검사・진료 업무보조 등 일 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 야를 보조하는 행정보조 인력

8.	 - <u>실무직</u>	근로자	
-	 		

9.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제2조제1호의 실무직 근로자로 한다.

② <u>실무직</u> 근	<u>로자</u>
	·

- ③ ----- <u>「군산시청</u> 원경찰복무규칙」----
- ④ <u>청원산림보호직원은「청원산림보호직</u> 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u>실무직 근로자</u>--

1. 행정실무원

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공사 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현장지도 단속 감시 인력, 부속실운영, 방문 민원인 접대·안내 등 단순잡역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민원제증명 발급, 행정 전산프로그램 운영, 문서수발 및 정리, 연구·실험·검사·진료 업무보조등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일정분야를 보조하는 행정보조 인력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중 실무직 전환인력

- 2. ~ 5. (생략)
- 6. 실무직전환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 용된 기간제근로자 중 실무직 전환인력

- ② (생략)
- ③ 계절적인 행정수요와 일시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채용된 인력은 실무직근로자로 운용할 수 없다.
- ④ (생략)
- ⑤ 사용부서는 <u>실무직근로자</u>에게 회계업 무를 직접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정수책정) ① <u>실무직근로자</u>의 직종별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 ② 관리부서는 <u>실무직근로자</u>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u>실무직근로자</u>의 정수책정 승인 시 사 용부서 공무원의 정원 등 종합적인 검 토를 하여야 한다.
 - 2. <u>실무직근로자</u> 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정규직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 될 경우 에는 그 정수를 줄인다.
 - 3. · 4. (생략)
 - 5. <u>실무직근로자</u>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 니하는 경우 그 정수를 줄인다.

- 2. ~ 5. (현행과 같음)
- 6. 정규직 전환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 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 <u>가. 실무직 전환자 : 정규직 전환자 중</u> 인건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근로 자
 - 나. 국도비 전환자 : 정규직 전환자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종사하거나 별도 의 국·도비 보수지침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_
	실무직 근로자	_

④ (현행과 같음)

5	실무직	근로자

제5조(정수책정) ① <u>실무직 근로자</u>-----------.

② ------ <u>실무직 근로자</u>-----.

- 1. <u>실무직 근로자</u>-----------.
- 2. <u>실무직 근로자</u> ------
- 3. 4. (현행과 같음)
- 5. <u>실무직 근로자</u> ------

6	. <u>실무</u>	-직근로자	로 전환된	인력	이 퇴직	시
	에는	충원하지	아니하고	. ユ >	정수를	줄
	인다.	•				

- 제6조(정수책정 절차) ① 사용부서가 새로 운 <u>실무직근로자를</u> 필요로 하는 때에는 <u>별지 제1호 서식의 실무직근로자</u> 정수책 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 여야 한다.
 - ② 관리부서가 사용부서로부터 실무직근 로자 정수책정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는 채용목적·인원·기간·급여 등의 적 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직근로자 정수를 책정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 다.
 - ③ 예산부서는 <u>실무직근로자 정수책정 승인서</u>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 제7조(대장 등 관리) <u>근로자</u>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장 등을 작 성·관리한다.
 - 1. 관리부서
 - 가. <u>정수책정</u> 승인대장 : <u>별지 제3호</u> 서식
 - 나. 인력 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 다. <u>근로자</u> 인사기록카드(또는 인사기록관리파일): <u>별지 제5호 서식</u> 인사기록카드는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포상, 근로관계 종료 등을 포함하다.
 - 2. 사용부서

가. 출근부 : 별지 제6호 서식

나. 임금지급관련 서류 : 별지 제7호

6. <u>실무직 근로자</u>
제6조(정수책정 절차) ① <u>별지</u> <u>실무직 근로자를</u> <u>별지</u> 제1호서식의 실무직 근로자
② <u>실무직 근로자</u>
③ <u>실무직 근로자 정수책정 승</u> 인(불승인)통보서
제7조(대장 등 관리) <u>실무직 근로자</u>
1
가. <u>실무직 근로자 정수책정</u> <u>별지</u> 제3호서식
나. <u>실무직 근로자 인력</u> <u>별지 제4호</u> 서식
다. <u>실무직 근로자</u> <u>별지 제5호서식</u>
2 가 <u>별지 제6호서식</u> 나. 월별 급여내역 : 별지 제7호서식

서식

다. 근무상황부 : 별지 제8호 서식

라. 시간외 근로기록부 : <u>별지 제9호</u> 서식

제8조(채용) ① (생 략)

- ② 관리부서는 <u>실무직근로자</u>를 채용할 때에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u>기간제근로자</u>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실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채용관계 서류를 제출받고 신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 제9조(실무직근로자로의 전환)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u>기간제근로자</u>(이하"전환대상자"라 한다)를 <u>실무직근로자</u>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평가 및 군산시 <u>실무직근로자</u> 인사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의 전환평가는 <u>별지 제10호 서식</u>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관리부서는 <u>실무직근로자</u>를 확정한 경우 그 명단을 예산부서·사용부서·급여 담당부서 및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u>근로자</u>로 채용할 수 없다.
 - 1. ~ 8. (생략)
- 제11조(근로계약) ① 사용부서는 제8조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

다 별지 제8호서식	
라 별지 제9호서	<u>식</u>
제8조(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실무직 근로자</u> <u>기간제 등</u>	
<u>기신에 1</u> <u>자</u>	<u>- 王</u> 一.
③ <u>실무직 근로자</u>	
 .	
1. ~ 8. (현행과 같음)	
제9조(실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①	
<u>기간제 근로자</u> 실무직 근로자	
<u> </u>	
<u>실무직 근로자</u>	
 ② <u>별지 제10호서 설무직 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기</u>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실무직 근로자	
<u> </u>	
제10조(결격사유) 실무직 근로자	
1. ~ 8. (현행과 같음)	
제11조(근로계약) ①	
<u>실무직 근로자 별지 제113</u>	<u>호서</u>

<u>1호 서식의</u> 근로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u>한다</u> . 다만, 부서
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
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사용부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각 각 1부씩 보관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를 관리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직종 변경) ① 관리부서는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근로 자의 직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협의하여 직종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생략)
 - ③ 관리부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종을 변경한 경우 예산부서 · 급여 담당 부서 · 사용부서 및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제13조(전보) ① 관리부서는 업무상의 필 요,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 ②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전보한 경우 새 로운 사용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전보가 발생된 경우 실무직근로자의 전보 전 사용부서는 전보된 사용부서에 근로자와 관련된 서류일체를 즉시 전달하 여야 한다.
- 제14조(신분증 등) ① 관리부서에서는 실무 직근로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u>규격·제식 및 기재사</u> 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시행규칙」에

<u>식의 실무직</u>
<u>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u>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정규직 전환자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 <u>실무직</u> 근로계약서 <u>실무직 근로자</u> <u>실무직 근로계약서</u>
제12조(직종 변경) ① <u>실</u> 무직 근로자의 <u>실</u> 무직 근로자의 <u>실</u> 무직 근로자 와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직 근로자에
<u>실무직 근로자에</u>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전보) ① 실무직 근로자의 실무직
<u>근고자를</u>
② <u>실무직 근로자</u>
· ③ <u>실무직 근로자</u> <u>실무직 근</u> 로자와
제14조(신분증 등) ① 관리부서에서는 실무 직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직 근로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의하	여.	신분증을	밬급핰	수	있다
- 1 - 1	- 1			- 1	<i>^</i> ∕∧ I

- ② 사용부서는 <u>실무직근로자</u>가 청사 내에 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패용하게 하 여야 한다.
- ③ 사용부서는 <u>근로자</u>가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 관리부서로 반납 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관리부 서에서는 <u>근로자</u>의 재직·경력증명의 신 청이 있을 때에는 <u>별지 제13호 서식 재직</u> 증명서, 제14호 서식 경력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u>근로자의</u> 인사 및 징계처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u>실무직근로자</u> 인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u>기간제근로자</u>의 실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
 - 2. ~ 4. (생략)
- 제20조(복무) ① <u>근로자</u>는 근로의 시작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사항을 기록하여야 한 다.
 - ② <u>근로자</u>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성실의무) <u>근로자</u>는 시민 전체의 봉 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② 실무직 근로자
③ <u>실무직 근로자</u>
제15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u>실무직 근로자</u> <u>별지 제13호서식의 재직증명서,</u> <u>별지 제14호서식의</u>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u>실무직 근</u> 로자의 실무직 근로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의 기능) 1. 기간제 근로자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복무) ① <u>실무직 근로자</u>
② <u>실무직 근로자</u>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성실의무) <u>실무직 근로자</u>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u>근로자</u> 또는 <u>근로</u>
<u>자</u> 였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 제23조(친절·공정의 의무) <u>근로자</u>는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 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24조 (청렴의 의무) <u>근로자</u>는 직무와 관 런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 을 수 없다.
-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u>근로자</u>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 (직장이탈금지) <u>근로자</u>는 사용부서 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 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 제27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u>근로자</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능률의 현저한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1. <u>근로자</u>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 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 2. <u>근로자</u>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 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u>실무직 근로자</u>
<u>실무직 근로자</u>
·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친절·공정의 의무) 실무직 근로자-
제24조 (청렴의 의무) 실무직 근로자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실무직 근로자
제26조 (직장이탈금지) <u>실무직 근로자</u>
<u></u>
제27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u>실무직 근로</u>
<u> </u>
 영리를 추구
단, 단시간근로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u>실무직 근로자</u>
2. <u>실무직 근로자</u>

1

되는 경우

3. (생략)

제28조(겸직허가) ① <u>근로자</u>가 제27조의 영 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 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근로시간) <u>근로자</u>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근로시간 중휴게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단,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연장근로) <u>근로자의</u> 연장근무는 원 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용부서의 업 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관리부서 및 <u>근로자의</u> 사전동의를 얻어 연장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 업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u>근로자의</u> 사전 동의 없이 연 장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 완료 후 그 내용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출장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근로자</u>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 되는 비용은 <u>「공무원여비규정」</u>등이 정 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지각, 조퇴, 외출) ① 근로자의 질

3. (현행과 같음)
제28조(겸직허가) ① <u>실무직 근로자</u>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실무직 근로자의 책임) 실무직 근로 자
제31조(연장근로) <u>실무직 근로자의</u>
<u>실무직 근로자의</u>
실무직 근로자 의
제32조(출장 등) ① <u>실무직 근로자</u>
② <u>「공무원 여비 규정」</u>
제33조(지각, 조퇴, 외출) ① <u>실무직 근로</u>

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거나 외출하려는 때에는 사용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휴일) ① <u>근로자의</u>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한다. 이 경우 일요일은「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일로 한다.

② (생략)

- 제35조(연차유급휴가) ① 연간 8할 이상 출 근한 <u>근로자</u>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 다.
 -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u>근로자</u>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④ 3년 이상 근속한 <u>근로자</u>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한다.
 - ⑤ 사용부서의 장은 휴가의 사용만료일 3 개월 전에 남아있는 휴가일수를 <u>근로자에</u> 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구하여야 하며, 사용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u>근로자의</u> 귀책사유로 연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제36조(휴가의 사용방법) ① (생 략)

<u>~ </u>	
 ②	(현행과 같음)
	조(휴일) ① <u>실무직 근로자의</u>
	(현행과 같음)
	조(연차유급휴가) ① <u>실무직 근로자</u>
	<u>실무</u>
<u>근</u> :	로자
3	
	<u>실무직 근로자</u>
	 <u>실</u> 무직 근로자
	··.
5	
 게	<u>실</u> 무직 근로자 ⁽
	실무직 근
<u> 자</u>	일

② 휴가는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역	겁
무공백을 감안하여 부서별 실무직근로	갂
<u>의</u> 2분의 1 이상이 동시에 휴가를 사용학	할
수 없다. 단, 부서내 실무직근로자가 19	긴
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략)

- 제37조(특별휴가) ① <u>근로자</u> 본인이 결혼하 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u>별</u> <u>표2</u>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시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u>실무직근로자에게</u> 해당 재직기간 중5일, 20년 이상 재직한 <u>실무직근로자에게</u> 해당 재직기간 중 12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재직기간은 군산시 <u>실무직근로자</u> 재직 기간으로 적용한다.

2. · 3. (생략)

- 제38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u>근로자</u>가 업무 외의 질병·부상 등으로 근무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 가할 수 있다. 다만, 질병·부상으로 인 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 ② 사용부서는 <u>근로자</u>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 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병가 를 허가한 경우 반드시 관리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u>근로자</u>는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u>실무직 근로자의</u>
실무직 근로자가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특별휴가) ① <u>실무직 근로자</u> <u>별표 2</u> -
· ② 실무직 근로자에게 실무직 근로자에게
1 <u>실무직 근로자</u>
2.·3. (현행과 같음) 제38조(병가) ① <u>실무직 근로</u> <u>자</u>
② 실무직 근로자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실무직 근로자</u>

제39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u>근로자</u> 가 다	제39조(공가) <u>실무직 근로자</u>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	
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	··
로 한다.	

1. ~ 5. (생략)

제40조(휴직) ①사용부서의 장은 <u>근로자</u>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 ② 사용부서는 <u>근로자</u>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1조(육아휴직) ① 육아휴직은 <u>「남녀고</u> 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 ②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u>근로자</u>는 휴직일 30일 전까지 <u>별지 제15호 서식의</u>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2조(휴직기간 및 급여) <u>근로자</u>의 휴직기 간 및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다.

1. ~ 4. (생략)

- 제45조(복무감독) ① 복무감독부서는 <u>근로</u> <u>자</u>의 복무기강확립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근무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복무감독부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u>근로</u> <u>자</u>가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에는 경고 또 는 주의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u>근로</u> <u>자</u>가 반성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고 지속·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타인

1,000	<u>E1 C — 1</u>
	·
- (5) - 1 - 1 6)	
1. ~ 5. (현행과 같음)	
제40조(휴직) ① 자	<u>실무직 근로</u>
1. ~ 4. (현행과 같음)	
② 실무직 근로기	<u>\</u>
 제41조(육아휴직) ①	「나네ㅋ요
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	
<u>률</u>	
② 별지 제1	
<u> </u>	
,	
제42조(휴직기간 및 급여) 설	<u>실무직 근로자</u>
	•
1. ~ 4. (현행과 같음)	
제45조(복무감독) ①	
근로자	
②	<u>실무직 근</u>
로자	
	0 H - 1 -
③ 로자	

또는 시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제46조(정년) ① <u>근로자</u>의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년으로 한다.

② (생 략)

- 제47조(퇴직) <u>근로자</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본다.
 - 1. · 2. (생략)
 - 3. <u>근로자</u>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 4. ~ 6. (생략)
- 제48조(퇴직원) ① <u>근로자</u>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예정 30일 전에 사용부서 의 장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종변경의 경우 변경이 확정된 경우 퇴직원을 제출한다.
 - ② 사용부서의 장은 <u>근로자</u>로부터 퇴직원을 접수한 경우 퇴직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9조(퇴직금) ① <u>근로자</u>가 소속기관에 1 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 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1 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 는 날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② (생략)
 - ③ <u>근로자는</u> 필요시 <u>「근로자 퇴직급여</u> <u>보장법」</u>에 따라 <u>별지 제16호 서식의 신</u> <u>청으</u>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사용부 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실을 관리부서에

제46조(정년) ① <u>실무직 근로자</u>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퇴직) <u>실무직 근로자</u>
1. • 2. (현행과 같음)
3. <u>실무직 근로자</u>
4. ~ 6. (현행과 같음)
제48조(퇴직원) ① <u>실무직 근로자</u>
 .
② 실무직 근로자
제49조(퇴직금) ① <u>실무직</u> 근로자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직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별지 제16호서식의 퇴직금
<u>중간정산 신청서</u>

통보하고, 관리부서는 이를 인사기록카 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0조(표창기준) ① <u>근로자</u>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 1. ~ 5. (생략)
 - ② 기타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51조(청원경찰의 징계) 청원경찰의 징계 및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u>「군산시 청원경찰</u> 복무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 제52조(징계사유) <u>근로자</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u>인사위원회</u>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 9. (생략)
- 제5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생 략)
 -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 2. (생략)
 - 3. 별지 제18호 서식의 확인서
 - 4. ~ 7. (생략)
 - ③ ④ (생 략)
- 제56조(징계절차 및 징계관리) ①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부서의 장(시 장)이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야 한다.
 - 1.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3일 전까지 <u>인사위원회의</u> 위원들에게는

제50조(표창기준) ① <u>실무직 근로자</u>
1. ~ 5. (현행과 같음)
② 「군산시포상조례」
제51조(청원경찰의 징계)
<u></u>
제52조(징계사유) <u>실무직 근로자</u>
제5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2
1.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 또는 징 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인서
4.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징계절차 및 징계관리) ①
1
<u>위원회의</u>

식무직 근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19호 서 식의 출석통지를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 다.

- 2. (생략)
- 3. <u>인사위원회</u>는 의결 전에 <u>해당근로자</u>에 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단,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 4. (생략)
- 5. 징계결과 통보는 징계의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u>근로자에게 별지 제20</u> 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u>제21</u> 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의한다.
- 6.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 제58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사용부서는 <u>근로자</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징계사유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 2. ~ 8. (생략)
 - ② (생략)
 - ③ 사용부서는 <u>근로자</u>와 근로계약을 해지 한 경우 지체없이 관리부서 및 예산부서 에 통보하여야 한다.

로자에게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출 석통지를
2. (현행과 같음)
3. <u>위원회</u> <u>해당 실무직 근</u> <u>로자</u>
4. (현행과 같음) 5 실무직 근로자에게 별지 제20
<u>호서식</u> <u>별지 제21호서식-</u>
<u>실무직 근로자</u>
 1. <u>「군산시 취업규칙」 및 그 밖의 규정</u> <u>에 따른 징계사유</u>
2.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실무직 근로자</u>

제59조(해고예고) ① 징계절차를 거쳐 <u>근로</u>
<u>자를</u>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
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보통 때의 임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u>근로자가</u> 고의로
시 또는 타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
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u>근로자</u>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1조(임금) ① <u>근로자</u>의 매 회계년도별 임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담당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형평성, 물가변 동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② 임금은 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u>부득이</u>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 다.
 - ③ ④ (생 략)
- 제62조(여성근로자의 보호) ① 산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수유시간 등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사용부서는 여성 <u>근로자</u>의 요구가 있는 경우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③ 생후 1년 미만의 <u>육아를 가진 여성 근</u> <u>로자</u>가 요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 제63조(성희롱 예방 교육) ① 직장 내 성희 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

제59조(해고예고) ① <u>실무직</u>
근로자를
<u>실무직 근로자가</u>
 .
·
② <u>실무직 근로자</u>
 .
제61조(임금) ① <u>실무직 근로자</u>
 ,
근로계약서에 다르게 명시되거
<u>나 부득이</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여성 실무직 근로자의 보호) ①
<u>「남녀고용평</u>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② <u>실무직 근로자</u>
③ <u>유아를 가진 여성 실무</u>
<u>직 근로자</u>
 .
제63조(성희롱 예방 교육) ①

여는	_「남	여고용	평등፤	<u> </u>	가정양	<u></u> 클립지
원에	관한	법률」	_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 ② 사용부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u>근로자들</u>로 하여금 시 등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64조(교육훈련 등) ① 관리부서 및 사용 부서는 <u>근로자</u>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 을 위하여 교육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②·③ (생 략)

- 제65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는「산업안 전보건법」에 따라 <u>근로자</u>의 안전에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② <u>근로자는</u>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 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 다. 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 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u>근로자가</u> 불 이익을 감수한다.
- 제66조(작업 안전용품) 사용부서는 <u>근로자</u> 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지급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u>근로자는</u> 근무 중에는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 제67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u>근로자</u>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보고 해야 한다.
- 제68조(질병자의 근로제한)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②
<u>실무직 근로자들</u>
·
제64조(교육훈련 등) ①
실무직 근로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안전관리) ①
<u>실무직 근로자</u>
 .
② <u>실무직 근로자는</u>
실무직 근로자가
제66조(작업 안전용품) 실무직
근로자의
<u> </u>
<u>실무직 근로자는</u>
 .
제67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u>실무직 근</u>
로자
•
-100구(키버리스) 크고크리) ①
제68조(질병자의 근로제한) ①

걸린 것이 명백한 <u>근로자</u> 가 특별한 사유	-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고집할 경우에는	-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제38조 및 제40)
조의 규정에 따라 병가 및 휴직을 명하여	
근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근로의 제한을 받은 <u>근로자</u>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안전수칙) <u>근로자</u>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7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보상을 받게 될 <u>근로자</u>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보상액의 한 도 내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② (생략)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생략)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 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실무직근로자 정수책정 요구서

(생략)

단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6조 제1 항에 의하여 실무직근로자 정수 책정을 요구

<u>실무직 근로자</u>
②
<u>실무직</u> 근로자
제69조(안전수칙) <u>실무직 근로자</u>
· 1. ~ 7. (현행과 같음)
제7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u>실무직 근로자</u>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u>경조사별 휴가일수표</u> (제37조제1항과 관련)
(현행과 같음)
*비고 : 「입양특례법」
 (원체기 기.Ó)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실무직 근로자 정수책정 요구서 (현행과 같음)
· 문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실무직 근로자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실무직근로자 정수책정 승인(불승인) 통보서

(생략)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6조 제2 항에 의하여 실무직근로자 정수 책정을 승인 (불승인) 통보합니다.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실무직근로자 정수책정 숭인대장

(단위 : 명)

부 서 명	계	행 정 실무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 보호직원	무기계약 전환자	정수변경 일 자
					5			

-----.

[별지 제2호서식]

실무직 근로자 정수책정 승인(불승인) 통보서

(현행과 같음)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 실무직 근로자 -----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실무직 근로자 정수해정 숭인대장

(단위 : 명)

부서명	계	행 정 실무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 보호직원	정규직 전환자	정수 변경 일자

[별지 제4호서식]

실무직근로자 인력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실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생략)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무기계약 전환 심사위원용)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실무직 근로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실무직 근로자 인력관리대장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실무직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서식]

실무직 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실무직 근로자 전환 심사위원용)

(현행과 같음)

[별지 제11호서식]

실무직 근로계약서

<u>군산시장</u>(이하 "사용자" 이라 칭함)과 근로자____은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 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생략)

제7조 (관련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실무직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서(임금협약)에 따른다.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실무직근로자 신분증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실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서 (생략)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생략)

[별지 제16호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생략)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49조 제3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령」 제3조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생략)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현행과 같음) 제7조 (관련해석)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 정 」							
 .							
(현행과 같음)							
[별지 제12호서식]							
실무직 근로자 신분증 (현행과 같음)							
[별지 제15호서식] 실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서							
(현행과 같음)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u>.</u>							
(현행과 같음)							
[별지 제16호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현행과 같음)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49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경							
·							

[별지 제17호서식]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 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생략)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19호서식]

출석통지서

(생략)

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 다.

>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 진술권 포기서

(생략)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

[별지 제20호서식]

(생략)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56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생략)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군산시 실무직근 로자 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이 사유설 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사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생략)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

(현행과 같음)

보

[별지 제17호서식]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 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현행과 같음)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19호서식]

출석통지서

(생략)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 진술권 포기서

(생략)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

[별지 제20호서식]

(현행과 같음)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현행과 같음)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현행과 같음)

군산시 실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

군산시 공고 제2018-1676호

공 고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건강진단 수 수료 규정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1]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제5조1항 관련)

-제14항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상위법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의 수수료 규정에 따름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9월 24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보건사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jiwon630@korea.kr
 - 2) 주소 : 군산시 수송동로 58(수송동, 군산시보건소), 3층 보건사업과
 - 3) 팩스: 063-463-1470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사업과(전화: 063-460-32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제5조1항 관련)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제5조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고
1. 건강진단서	1통	500	
2. 채용건강진단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4. 특별진단서	1통	2,000	요양신청용,병사용, 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	1통	5,000	
6. 〈삭제 2015.04.30〉			
7. 사망진단서	1통	500	
8. 〈삭제 2015.04.30〉			
9.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10. 1통 초과시	1통	100	
11.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서	1통	500	
12. 〈삭제 2015.04.30〉			
13. 〈삭제〉			
14. 건강진단 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규정된 수수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제5조1항 관 ^{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고
l. ~ l3. (생략)	-	-	-
14. 건강진단 결과서〈신설〉	<u>1통</u>	1,500	식품위생 분 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 칙

[별표1]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제5조1항 관 ^{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고
1. ~ 13. (현행과 같음)	-	-	-
14. 건강진단 결과서	<u>1통</u>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규정된 수수료	〈삭제〉

군산시 공고 제2018 - 1680호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호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청년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함.

3. 주요내용

- O 조례제정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 O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O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O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O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일자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 일자리담당관 고용노사계(2063-454-4362)으로 문의 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장소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일자리담당관(전화: 063-454-4362, FAX: 063-454-434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	-------	----	-----	----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군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청년창업지원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 거나 개발·보급,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
-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5. 청년 구직 지원금 지원에 관한 전반사항
-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기본계획에 반영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
 -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 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 6. 청년 구직 지원금 지원
 -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 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전라북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8-1693호

공 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개정)이유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확대 및 분담률 완화,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제한 완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제도 등을 조례로 개정하여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확대 및 공동주택 분담률 완화로 성숙한 공동 체 문화 조성(안 제4조의3, 별표 1)
- 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당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민의 1/10 이상 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분쟁조정위를 상시 기구화 (안 제 16조, 제24조, 별지 제3호, 제8호 서식)
- 다.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 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 제26조, 별지 제19호 서식)
- 라.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선정 및 표창함으로써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

활성화 (안 제38조 및 제39조)

마. 기타 법률개정, 문구 등 일부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주택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의 경우 9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전화: 063-454-3722, FAX: 063-452-8828)
- 전자우편 : koky1129@korea.kr
-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전화: 454-37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3	≤례 명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	----	------	-----	-----	---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이 유 별	비고	
소네한 내용	찬성	반대	→	1124	

호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건축법」"을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법""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 중 "활성화 관련 문화축제 등 공모"를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육프로그램"을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제6호는 제외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전·후"를 "전·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을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구성·운영"을 "구성·운영"으로, "자격·선임·해임·임기"를 "자격·선임·해임·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성·운영"을 "구성·운영"을 "구성·운영"을 "구성·운영"을 "구성·운영"을 "구성·운영"을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리비·사용료"를 "관리비·사용료"로, "징수·사용"을 "징수·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지·보수·개량"을 "유지·보수·개량"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분쟁조정 신청)"을 "(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수 있다.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감정·진단·시험"을 "감정·진단·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출석·출장"을 "출석·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반려·중지되었"을 "반려·중지되었"으로 한다.

제2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대료의 증액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mark>공동주택 감사</mark>"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 및 감사"로 한다.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하고, 제26조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이하 "전문자문단"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전문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1.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가(분야별 공무원을 포함한다)
- 2. 선거분야 관련 전문가
- 3. 회계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
- 4.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 5. 그 밖에 전문자문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전문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전문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 · 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등의 검토 · 자문
-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등 관련 사항의 자문
- 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반복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자

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으려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 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전문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의 제목 "보<mark>칙</mark>"을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 표창"으로 한다. 제6장에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표창) 시장은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 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38조(우수 공동주택 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수 있다.
 -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와 우수단지 인증동판수여 및 제4조의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6조를 제39조로 한다. 별표 1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L.		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	:례는 군	·산시 호	뱅정
구역	안에서	「주택」	법」 <u>과</u>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법」및	「건축	<u>법」</u> 에	의
하여	건설된	공동주	택(아파	트, 연	립,

제3조 (종합계획수립)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 화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다.

다세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③ (생략)

제4조의3(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 🛪 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 표1과 같다.

- 1. 2. (생략)
- 3. 공동체 활성화 관련 문화축제 등 공 모에 선정된 사업
- 4. (생략)
- 5. 주민 참여형 보육프로그램 운영

<신 설>

,, 0
제2조 (적용범위)
<u>과 「도시 및 주거</u>
환경정비법」
제3조 (종합계획수립) ① "_
시장"

정

아

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소규모	 ,
①	 <u>"멉"</u>

- 1. · 2.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3(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① -	_
	_
	_

- 1. 2. (현행과 같음)
- 3. ----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
- 4. (현행과 같음)
- 5. -----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 로그램 --
-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설비, 물품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제외), 공과금, 식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다과비 및 음식재료비는 제외) 및 인건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는 제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6조 (지원사업 신청) ①・② (생 략)

③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는 5년간 지원사업을 신청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1조(보조금 지급) ① (생 략)

-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에게 보조금교부 청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보조금 교부 청구는 당해연 도말까지로 하며, 공동주택 공동체활 성화 지원사업은 별지 18호 서식에 의 거 제출한다.
- 1. 시공 <u>전·후</u> 사진첩(공동주택지원 사업에 한함.) 1부.
- 2. · 3. (생략)
- ③ ④ (생 략)
- 제1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등)①법제71조의 규정에의한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u>"분쟁조정위원회"</u>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라 함은 <u>"입</u> <u>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u> <u>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u>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上 小 </u>
다만, 제1항 제6호는 제외한
다.
제6조 (지원사업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1조(보조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1 <u>전·후</u>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 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② <u>"입주자</u> ·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 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 의결한다.
 - 1. 입주자대표회의의 <u>구성·운영</u> 및 동 별 대표자의 <u>자격·선임·해임·임</u> 기에 관한 사항
 - 2. 자치관리기구의 <u>구성·운영</u> 등에 관 한 사항
 - 3. <u>관리비·사용료</u> 및 장기수선충당금 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5. ~ 6. (생략)

제16조(분쟁조정 신청) ① (생 략)

-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1/10이상의 동의서.단,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입주자·사용자전체를 상대로 분쟁을 조정 신청하는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대신한다.
- 2. 대표자 선정서류
-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 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에 한함)와 동의함이 명시된 동의서

제15조(위원회의	기능)		
1	구	성 • 운영	

- 1. ----- <u>구성·운영</u> ---------- <u>자격·선임·해임·임기</u>----
- 2. ----- <u>구성·운영</u> -----
- 3. <u>관리비·사용료</u> ------징수·사용 -----
- 4. ----- <u>유지·</u> 보수·개량 -----
- 5. ~ 6. (현행과 같음)
- 제16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 록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

<u><신 설></u>

<신 설>

제18조의2(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u>감정·진단·시험</u>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u>출석·출</u>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 략)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u>반려·중지되었</u>을 경우에는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의결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신 설>

9. 삭 제

제24조 ① 삭 제

- ① (생 략)
-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

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 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 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야 한다.

-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 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 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비용부담) ①	
<u>감정·진단·시험</u>	
<u>출석·출장</u>	

$(2) \cdot (3)$	(현행과	같음)	

<u>반려 · 중지되었</u>	

제23조 --

(4)

•	

8. 임대료의 증액

제24조

- ① (현행과 같음)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출한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임차인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임차인 1/10(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1/2)이상의 동의서. 단,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신청함
- 2. 대표자 선정서류
-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 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에 한함)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장 공동주택 감사

<신 설>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 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u>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 및</u> 감사

- 제26조(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 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군산 시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이하 "전문자문단"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전문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
-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 가(분야별 공무원을 포함한다)
- 2. 선거분야 관련 전문가
- 3. 회계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
- 4.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 5. 그 밖에 전문자문단 운영을 위해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전문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전문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등의 검토·자문
-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 차 관련 사항의 자문
-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자 선 출 등 관련 사항의 자문
- 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5천 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반복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으려는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 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⑦ 전문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u>제26조</u> ~ <u>제35조</u> (생 략)

제6장 보칙

<신 설>

<신 설>

<신 설>

제36조 (생략)

<u>제27</u>조 ~ <u>제36</u>조 (현행 제26조부터 제35 조까지와 같음)

> 제6장 <u>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u> 표창

제37조(표창) 시장은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 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38조(우수 공동주택 단지 선정) ① 시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 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 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와 우수단지 인증동 판 수여 및 제4조의 보조금을 우선 지 원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별표 1] 〈신설 2016.08.10〉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기준

(제4조의3 제1항 관련)

1. 지원한도

지 원 사 업	시 분담 률	<i>공동</i> 주택 분담률	비 고(증감률)
1. 공동주택 주민 간 상생교류 및 공동협력사업	70	3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2.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70	30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명구관리대 미만 의무관리대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0	30	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
5.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 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70	30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 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0	40	위에서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신청단지 규모의 구	분 없이	 8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제외 대상

- 가.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나.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다.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사업
- 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 마. 그 밖에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02., 2017.07.03.>

공	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아파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성 명 생년월일
피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공동주택	관리법 제80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공	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대표자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제8호서식)<개정2017.07.03.>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아파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u>전화번호</u> □임차인 □임차인대표자회의 □임대사업자 □기타					
	성 명 생년월일					
피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임차인 □임차인대표자회의 □임대사업자 □기타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4 '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제19호서식]<신설>

공동주택관리 자문신청서 [□공사 □용역 □회계]							
	공동주택명		동 수				
신청 단지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	의 의결일	연락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	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조	·성)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군산시 고시 제2018-11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4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소룡동 1393-1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47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소룡동 1393-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47호선)사업

나. 명 칭 : 소룡동 진흥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1		시설결정	사항	금			
노선명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연장(m)	폭원(m)	면적(m²)	비고
중로3-47	122m	12m	군산고94 ('09.11.)	122m	7.4~10.4 m	1,237 m²	기존도로 확장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19. 12.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	:재지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권리에 관한사항
건인	시	동	지번	시도	(m²)	(m²)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합계						1,237				
1	군산	소룡	1474-9	대	209	87	군산시			
2	군산	소룡	1474-14	대	4	4	군산시			
3	군산	소룡	1474-13	대	61	61	김영웅	군산시 소룡동 1474-4		
4	군산	소룡	1393-136	대	3	3	군산시			
5	군산	소룡	1393-201	대	53	53	군산시			
6	군산	소룡	1393-144	대	69	4	군산시			
7	군산	소룡	1393-202	대	48	48	민동욱	인천광역시 남구 제일로 40번길 93-35(주안동)		
8	군산	소룡	1393-203	대	47	47	민동욱	인천광역시 남구 제일로 40번길 93-35(주안동)		
9	군산	소룡	1393-204	대	45	45	군산시			
10	군산	소룡	1393-205	대	50	50	추명옥	군산시 소룡동 1386-10 진흥아파트 1-305		
11	군산	소룡	1393-170	전	5	3	대한불교 조계종 은적사	군산시 소룡동 1332		
12	군산	소룡	1393-168	대	3	3	군산시			
13	군산	소룡	1383-71	임	40	40	임석봉	군산시 소룡동 1384-7		
14	군산	소룡	1349-22	도	2,187	122	군산시			
15	군산	소룡	1384-16	대	157	2	군산시			
16	군산	소룡	1383-37	임	113	113	군산시			
17	군산	소룡	1393-169	전	56	53	군산시			
18	군산	소룡	1393-171	전	25	15	군산시			
19	군산	소룡	1393-184	전	23	3	군산시			
20	군산	소룡	1393-10	대	1,071	428	군산시			
21	군산	소룡	1519-22	도	46	46	건설교통부			
22	군산	소룡	1474-1	대	122	7	군산시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연	Y =1] =1			물건의 종	소라	ار ا	소유자		비고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류	수량	단위	주소	성명	1 11 11
				건물	56.9	m²			
				건물	22.8	m²			
				화장실	2.4	m²			
				대문	1	식			
				계단	1	식			
1	군산시	1474-	내	마당	1	식	군산시 소룡동	김영웅	
	소룡동	4	41	담장	1	식	1474-4	П 0 0	
				감나무	1	주			
				동백나무	1	주			
				대추나무	1	주			
				철쭉	1	주			
				생울타리	1	주			
2	군산시	1393-	대	건물	134.3	m²		군산시	
2	소룡동	25	91	대문	1.0	식		L L'1	
3	군산 시 소 룡동	1393- 26	대	건물	57.7	m²	인천광역시 남구 제일로 40번길 93-35	민동욱	
	군산	1393-		건물	43.6	m²	인천광역시 남구		
4	시 소 룡동	27	대	출입문	2	식	제일로 40번길 93-35	민동욱	
5	군산시	1393-	대	건물	44.9	m²		군산시	
J	소룡동	28	91	마당	1	식		보 년/기	
				화장실 및 창고	13.5	m²			
				담장	5	m			
6	군산시 소룡동	1393- 31	대	대문	1	식		군산시	
	소중중	31		대추나무	1.0	주			
				편백나무	1.0	주			
				감나무	1.0	주			
	7 1			건물	42.9	m²			
7	군산 시 소	1393-	대	건물	5.5	m²	군산시 소룡동 1386-10 진흥아	추명옥	
'	기 도 룡동	29	"	건물	46.2	m²	파트 1-305	107	
				계단	1	식			
8	군산시 소룡동	1393- 52	대	창고	7.5	m²	군산시 소룡동 1393-84	최윤귀	
9	군산시	1393-	대	건물	95.2	m²		군산시	
	소룡동	7	-11	건물	16.7	m²		E U. 1	

군산시 공고 제 2018 - 113호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의거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로부터 승인·통보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제2항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군 산 시 장

1. 열람내용 : 202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 대상지역 : 군산시 전역

3. 주요내용

가. 군산시 도시전역에 대한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다. 2025 도시재생사업 단계적 집행계획

라.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등

4. 열람기간 : 2018. 8. 23. ~ 2018. 10. 2.(40일간)

5. 열람장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도시재생과

(연락처 ☎ 063-454-3651,3)

군산시 고시 제2018-114호

군산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58(2018. 5. 8.)호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57(2018.8.10.)호로 국비지원사항이 승인된 「군산시 중앙동 일원(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군 산 시 장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1. 사업명: 다시열린 "군산의 물길" 그리고 "째보선창으로 밀려오 3개의 큰 물결"
 - 2. 비전·목표 : 지역정체성, 도시경쟁력, 주민역량,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군산 만들기
 - 3. 추진전략
 - 가. 지역의 역사성과 유·무형 자산을 적극 활용한 지역정체성 강화
- 나. 대규모 유휴부지의 거점개발 추진으로 파급효과 극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다. 안심거리, 교통기반 구축, 상업 환경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라. 사업 종료 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의 거버넌스 역량강화
- 4. 계획범위 : 군산시 중앙동 일원(A=144,621 m²)
- 5. 계획기간 : 2018. 8. ~ 2023. 12.
- 6. 사업내용 및 국비지원사항

- H	110154		사업비	(억원)		사업
구분	사업명	총액	국비	지방비	민자	기간
	총 합계	401.65	150.00	100.40	151.25	
	소 계	250	150.00	100.00	(1.25)	
	한국선급 리모델링	19.5	11.75	7.75		18~20
	친환경 교통수단 시설조성	3	1.5	1.5		19~21
	째보선창가 명소화	14	7	7		19~21
	째보선창 홍보마케팅	5	2	3		18~22
	째보선창 가상복원 사업	3	1.5	1.5		20~22
	째보선창 역사관 조성사업	20	15	5		18~20
	공가 활용 사업	3.5	1.75	1.75	(0.3)	19~21
	철길보행로/생태공원 조성	25	12.5	12.5		18~21
	도시공원조성	50	44.5	5.5		18~20
	공공창업 공간조성	2	1	1		2020
	숙박시설 조성 지원	2	1	1		19~20
	해망로일대 가로정비	5	2.25	2.75		18~22
마중물	교통정온화 사업	15	7.5	7.5		20~22
사업	CEPTED 안전 보행길	5	2.5	2.5		20~22
	CCTV 설치	3	1.5	1.5		20~22
	주차장 시설 개선	3.5	1.75	1.75		19~20
	승강장 시설 개선	1	0.5	0.5		20~22
	수협창고 건물리모델링	25	18	7		18~20
	마을기업육성특산물 개발	3	1	2	(0.2)	19~21
	째보선창 문화특화조성	5	2.5	2.5		19~22
	청년상인육성	3	1.5	1.5		19~20
	전통시장 환경개선	5	2.5	2.5		19~22
	공동시설 구축	3	1.5	1.5		2021
	주민역량강화	10	4	6		18~22
	주민공모(제안)사업	7.5	3.5	4	(0.75)	18~22
	도시재생센터 운영	7.5	0	7.5		18~2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5	0	1.5		2018
지자체	소 계	0.4	_	0.4	_	
사업	도시공원 공공상생상가 임대사업	0.4	_	0.4	_	2020
민간	소 계	150.00	-		150.00	
투자 사업	야놀자 숙박시설 조성사업	150.00	-	-	150.00	18~20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주식회사 아놀자 도시재생사업시행자 지정.

7. 활성화 계획 종합구상도



- 8.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행위제한 지역 및 행위제한 사항 : 없음
- 9.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열람

가. 열람기간 : 2018. 8. 27. ~ 10. 2.

나. 열람내용 : 군산시 중앙동 일원(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다. 열람장소 : 군산시청 2층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계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재생과(☎454-36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8-115호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시 중동 237-6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산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군산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9월 3일

군 산 시 장

- I. 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변경) 내용
- 1. 정비사업의 명칭 :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л н	도면표시	그 여 며	위 치		비고		
구 분	번 호	구 역 명 	위 시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 제	50	중동지구	군산시 중동	90 G09	_	80,698	
기 정 	50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37-6번지 일원	80,698	_	00,090	

- 나. 정비사업 시행방식 및 시행자
-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 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
- 2) 사업의 시행자
 - 기반시설 : 전라북도 군산시장, 주택개량 : 토지등소유자
- 3) 정비사업기간 : 정비구역 지정 시 ~ 2018년 12월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주차장

제542호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1	도면표시	기가다	위 치		면 적(m²))	최 초	ען ס
구 분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u>합</u> 계	_	_	2개소	2,617	감) 641	1,967		
기 정	91	주차장	중동 262번지 일원	430	_	430	전북 고 2515	_
변 경	92	주차장	중동 270-82번지 일원	2,187	감) 641	1,546		_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92	주차장	□군산시 중동 270-82번지 일원 □변경(면적 : 1,546㎡)	□ 사업 부지 면적 축소

나. 소공원

- 소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최 초	비고
ੀ ਦ	번 호	े च उ	종류	71 /1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u>합</u> 계	_		_	2개소	1,906	-	1,906		
기 정	18	서래공원	소공원	중동 266-2번지 일원	523	-	523	전북 고 2515	_
기 정	19	강변공원	소공원	중동 274-9번지 일원	1,383	-	1,383	('16.1.15)	_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최 초	비고
7	正	번 호	종류	Π Λ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	-	1개소	1,172	-	1,172		
7]	정	34	공공공지	금암동 274-236번지 일원	1,172	-	1,172	전북 고 2515 ('16.1.15)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시설명	위치		비고		
十七	시설명	T 4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_	2개소	3,355	감)43	3,312	
기 정	복합커뮤니티센터	중동 272-13번지 일원	1,732	_	1,732	
	노인복지시설		1,623	감)43	1,580	
기 정	경로당 부지	중동 274-352번지 일원	1,351	감)43	1,308	
	부설주차장		272	_	272	

- 공동이용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노인복지시설	□금암동 272-13번지 일원 □변경(면적 : 1,580㎡)	□ 사업 부지 면적 축소		

- 5. 기존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은 존치하고,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된 건축물은 철거이주로 계획하며, 기타 사업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자력개발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구분	적용기준	동 수(동)		구성비(%)		비고
丁七	역 상 기군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꼬
계	-	48	36	10	_	
존치대상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22	22	4.5	4.5	_
개량대상	□기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395	397	81.3	81.7	_
철거대상	□시설용지 편입 건축물	69	67	14.2	13.8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인위적인 절·성토 지양으로 지형변화의 최소화
환경	□정비사업 시행 시 인구 및 생활수준에 맞는 용수 공급
보전	□인구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자재 및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를 확립
	□정비구역 내 공공공지, 주차장 등 공공용지 비율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축물 개량과 홍수 시를 대비한 우·오수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요소 제거
재난	□기존의 구역 내 지반상태를 유지하고 도로계획고를 인접대지 지반고에 맞춰서 배수가
방지	원활 하도록 조성
	□구역내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교육환경	□중동지·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경계로 500m 인근에 초등학교						
현황	1개소	개소(구암초교)가 위치하고 있음						
	ㅁ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는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그 0 치 거		소음[dB(A)]	65이하	50이하				
교육환경		진동[dB(V)]	70이하	65이하				
보호계획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교육시	설 이용 시 안전하고 편	^년 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	드록 계획				

- 8. 지구단위계획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 호	구 역 명	위 시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 설	50	중동지구	군산시 중동	80,698	_	80,698	
		지구단위계획구역	237-6번지 일원	00,090			

- 결정 사유서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		구성비(%)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7 78 4 (%)	
합 합 계	80,698	_	80,698	100.00	_
일반상업지역	60,238	_	60,238	74.65	_
준공업지역	20,460	_	20,460	25.35	_

2)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위 치	제 한 내 용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1	방화지구	중동 273-48번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2,360,000	전북고 136호	()중동지구
기정	1	당와시구	일원	외벽을 내화구조로 제한	(60,319)	('87.10.31)	편입면적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1 =			획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번호	위치	면적	(m²)	비고
- 인포	건모		빈오	T/1	기정	변경	
	계	67,796			67,796		
			1-1	중동 258번지 일원	9,599	9,599	현지개량용지
	1	10,552	1-2	중동 262번지 일원	430	430	교통시설(주차장)
			1-3	중동 266-2번지 일원	523	523	공간시설(서래공원)
	2	12.957	2-1	중동 270-84번지 일원	11,070	11,711	현지개량용지
		13,257	2-2	중동 270-82번지 일원	2,187	1,546	교통시설(주차장)
		9,377	3-1	중동 270-6번지 일원	7,645	7,645	현지개량용지
	3		3-2	중동 272-13번지 일원	1,732	1,732	공동이용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_			4-1	중동 274-395번지 일원	7,310	7,353	현지개량용지
	4	8,661	4-2	중동 274-352번지 일원	1,351	1,308	공동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10,199	5-1	중동 273-133번지 일원	9,927	9,927	현지개량용지
	5		5-2	중동 273-17번지 일원	272	272	공동이용시설 (노인복자시설 부설주차장)
	6	1/1579	6-1	중동 274-375번지 일원	13,195	13,195	현지개량용지
		14,578	6-2	중동 274-9번지 일원	1,383	1,383	공간시설(강변공원)
	7	1,172	7-1	금암동 274-236번지 일원	1,172	1,172	공공공지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 도	각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신세표	- 준공업지역 : 60%이하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 1,000% 이하								
중식된	- 준공업지역 : 300% 이하								
높 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층수)	- '국도의 계획 첫 이용에 단단 합필』 첫 '군산시 도시계획소데』에 따듬								

- 5)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내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현지개량 시 개인주차공간을 가급적 확보하여 노상주차 저감
 - 가로환경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별도 지정사항 없음(건축법에 따름)
- 10.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구	분	계 획 내 용
	내 해	- 본 정비구역의 입지특성상 표고차 및 경사가 거의 없는 매우 완만한 지형이나
丁 ^	п оп	해수면과 표고차가 크지 않아 우천시 상습침수구역임
화	-J]]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재	-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 준수

- 1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ㅇ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 계획 없음
- 12.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별도 계획 없음
- Ⅱ.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도 : 게재생략
- 1. 정비구역 결정도(S=1/1,000)
- 2. 정비계획 결정도(S=1/1,000)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1,000)
- 4.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1,000)
- 5. 지형도면 고시도(S=1/1,000)

군산시 공고 제2018-163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종합운동장)사업 완료 공고

군산시 사정동 13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군산종합운동장)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사정동 13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군산종합운동장)사업
 - 명 칭 : 월명실내씨름장 증축공사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전체 부지면적(변경없음): 188,700 m²

구분	기	정		비고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증·감	II Y
금회변경	씨름장 주차장(5)	248.5 m² 5,924.5 m²	씨름장 주차장(5)	305.8 m² 5,867.2 m²	증 57.3㎡ 감 57.3㎡	
합계	_	6,173.0 m²	_	6,173.0 m²	_	

- 건축규모 : 씨름장 1동/1층(건축면적 305.8 m², 연면적 305.8 m²)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착수일 : 2018년 5월 18일
 - 준공일 : 2018년 7월 30일

군산시 공고 제2018-1695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9일

군 산 시 장

1. 인적사항

성명	서벼	서벼	서벼	서벼	비사나라의이	별 생년월일	등록기준 발		발견일시	발견장소	사망원인	처리
성 명 성별			거	소	소 (사망일)	안치장소	Nega	방법				
	ПІЛЬ	미상 미상		불	상	2018.7.7.	군산시 어청도 항내 동쪽 해안가	사인미상	화장 후 납골			
미상 	비상				상	16:00발견	은파장례문화원	VLEINIS.	(군산시 승화원)			

2. 발생상황

- 변사자는 2018.7.7. 16:00경 군산시 어청도 항내 동쪽 해안가 산책로 인근 해상에서 신원미상 표류하는 변사체가 발견되어 인양되었으며 신원확인불가
- 중국인으로 추정되어 중국주광주총영사관에 신원확인 하였으나 신원확인되지 않음
- 3. 공고기간 : 2018. 8. 29 ~ 2018. 9. 28.
- 4. 처리방법 : 화장 후 승화원 안치
- 5. 납골기간: 10년
- 6. **봉안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 석곡로 436-34(**승화원** 063-453-4055)
- 7. 연 락 처 :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63-454-3063)